

유지관리 관련 법령



ICT폴리텍대학
ICT Polytech Institute of Korea

2026년 최 창선

목차

- I. 유지관리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률, 시행령**
- II.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출 안내**

I. 유지관리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률, 시행령

1978년 10월 어느 날
법대로 하면 기술자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노가다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에 있다.

스마트 폰 앱 다운로드 받기

1. Play Store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설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열기
3. 방이 12개 나타난다. **법령.....**
4. 방을 먼저 클릭하고 찾고자 하는 법명을 친다.
5.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블** 검색해 보십시오.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폰 앱 화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별표서식
판례	헌재결정	법제처 해석례	행정심판
행정기관 정보	조약	외국어번역	공공기관 규정

스마트폰 앱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찾기

법령

1. 법령을 클릭 한다.
2. 검색창에 **정보통신~**을 친다.
(두 글자 이상만 입력하면 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을 클릭 한다.
4. 제2조 2호에 공사(유지관리 포함)가 정의 되어 있다.
5. **유지관리**는 법 제37조의2, 3, 4에 규정되어 있다.

유지관리 관련 법률과 시행령 내용

법에서 기술자가 알아야 할 것은

1. 목적
2. 용어
3. 숫자(벌칙, 과태료 포함)이다.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監理)·**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 **유지관리**는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을 하는 업무이다.

유지관리 관련 용어정의

1.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별표 1의 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비이다.
2.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다.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다.
4. 유지관리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이다.

유지관리 관련 용어정의

5. 유지보수 · 관리는 영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시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 · 관리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6. 유지보수 · 관리자는 영 제37조의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이다.

유지관리 관련 용어정의

7. 성능점검은 법 제37조3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운전 · 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이다.

8. 성능점검 대행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이다.

유지관리 관련 용어정의

9. **공사업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0. **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 · 전자 · 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1. 설계는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이다.

12. 정보통신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유지관리 관련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7.18)	행정규칙
<p>제37조의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 관리기준)</p> <p>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p> <p>제37조의4 (유지보수 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등)</p> <p>제78조(과태료)</p> <p>① 300만원 이하</p>	<p>제37조의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 관리 대상 등)</p> <p>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자격기준)</p>	<p>제8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p> <p>제9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선임)</p> <p>제10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선임신고 등)</p> <p>제11조 (규제의 재검토)</p>	<p>2025.7.18</p> <p>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 (고시)</p> <p>2025.8</p> <p>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p>

유지관리 관련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행정규칙)

법령	고시(행정규칙)
<p>제37조의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 관리기준)</p> <p>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 · 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 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유지보수 · 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7. 18)</p>	<p>2025년 7월 18일</p> <p>정보통신설비</p> <p>유지보수 관리기준</p>

법령	시행령
<p>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 ·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 관리 대상 등)</p> <p>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p> <p>1.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p> <p>가. 공동주택</p> <p>나. 학교시설 등</p>

법령	시행령
<p>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p> <p>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 · 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 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법 제37조의3제2항 후단에서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p>

법령	시행령
<p>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p> <p>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3. 7. 18)</p>	<p>③ 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24. 10. 29.]</p>

법령	시행령
<p>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등)</p> <p>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p>	<p>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p> <p>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p>

법령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등)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유지관리 관련 과태료 조항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3. 7. 18)

6의2.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 ·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의4.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의6.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유지관리 관련 시행규칙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2호,
2025. 7.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 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유지보수등에 대한 계획 수립
2. 유지보수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 유지보수등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유지보수등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보수 · 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

무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 · 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유지보수 · 관리기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 · 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 · 조사 · 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9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완공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별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선임기준
(시행규칙 제9조의 제1항 관련)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영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 기술자인 자	1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고급 기술자 이상인 자	1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	1
	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초급 기술자 이상인 자	1

2. 용도변경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 계약의 **해지일 또는 위탁 계약기간의 종료일**
- 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10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 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사본 및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②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

③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 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8.]

부칙 <제152호, 2025.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협회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설명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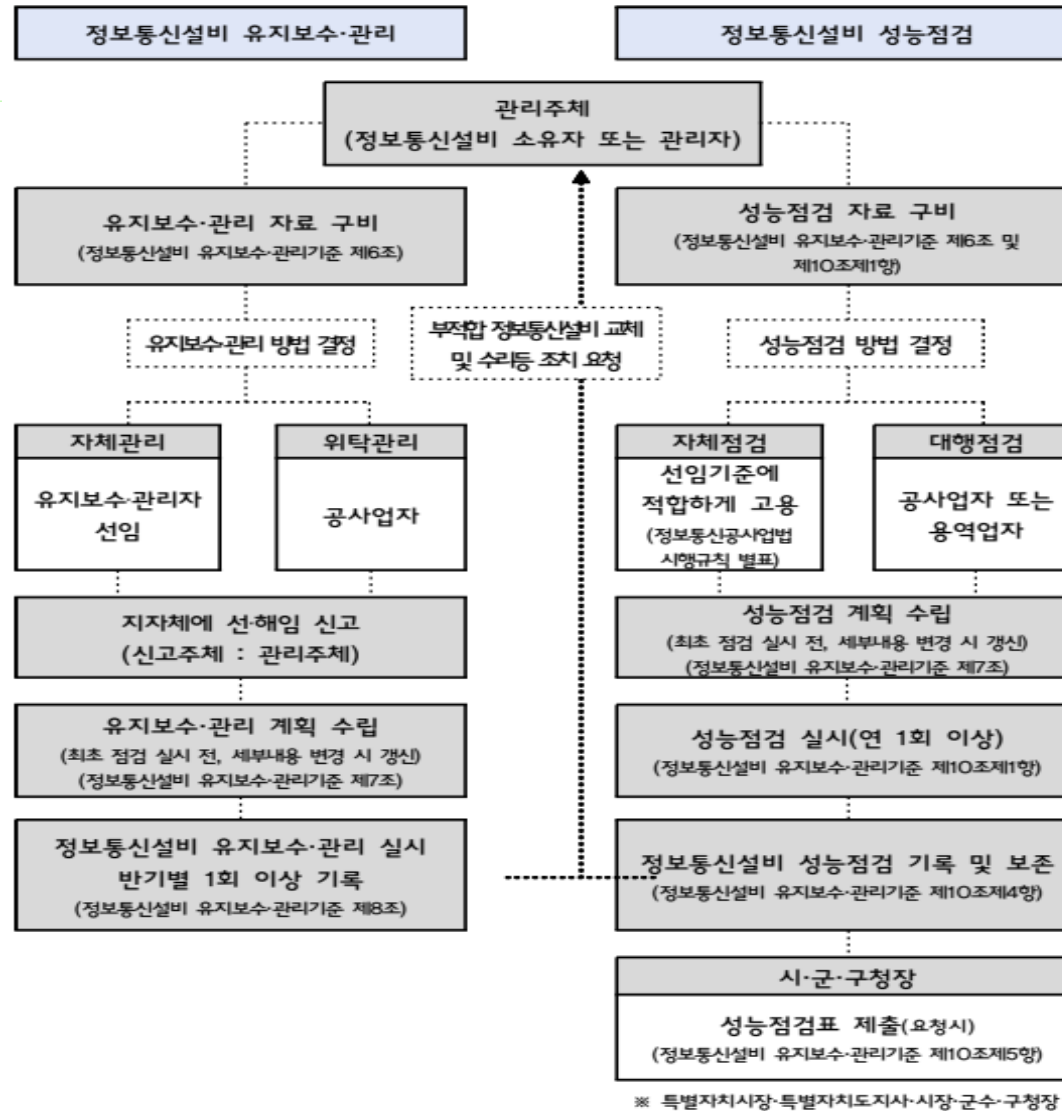


한국정보통신신문, 2025년 8월 1일

유지보수 관리 업무와 성능점검 업무 비교

구분	유지보수 관리 업무: 법37조의 4	성능점검 업무: 법37조의 3
주요 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 · 관리	정보통신설비의 운전과 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주요 업무	설비의 외관, 기능,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 적으로 점검 실시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결과 기록(5년간 보존)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 점검표에 기록	자자체 요청시 성능점검표 작성 및 제출
수행 방법	업무 위탁	점검 및 작성 대행
사업자	공사업자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주기 등	반기별 1회 이상, 최대 5개 건물 중복 선임	연 1회 이상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처리절차



유지보수·관리 단계별 주요 사항(1)

구 분	주 요 내 용
<p>정보통신설비 1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한 자료 구비</p>	<p>○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한 자료 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별지 제1호서식) <p>※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6조</p>
<p>2 유지보수·관리 방법 결정</p>	<p>○ (관리방식) 유지보수·관리는 관리주체가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식과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 중 선택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관리) 관리주체에서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직접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 <p>※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위한 기술자 보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관리) 관리주체가 법 제37조의4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계획의 수립과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 9페이지, 2025년 8월

유지보수·관리 단계별 주요 사항(2)

<p>3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p>	<p>○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4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해임의 경우,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규 선임 필요</p>
<p>4 유지보수·관리 계획 수립</p>	<p>○ 관리주체 또는 유지보수·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유지보수·관리 대상 설비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절차, 산업재해방지 대책, 긴급상황 매뉴얼 등 포함 ※ 점검 대상 설비 외에 점검이 필요한 설비 추가 가능</p>
<p>5 유지보수·관리 실시 및 기록</p>	<p>○ 관리주체 또는 공사업자가 선임한 유지보수·관리자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주기적인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 점검 ○ 점검 완료 이후 점검 결과는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는 관리주체에게 요청 가능</p>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 9페이지, 2025년 8월

성능점검 단계별 주요 사항(1)

구 분	주 요 내 용
1 성능점검 자료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점검을 위해 다음의 자료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별지 제1호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6조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별표 2)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10조
2 성능점검 방법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방식)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점검하는 방식과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관련 점검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점검하는 방식 중 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점검) 관리주체가 일정 등급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 - (대행점검) 관리주체가 법 제37조의3에 따라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성능점검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

성능점검 단계별 주요 사항(2)

<p>3 성능점검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 또는 성능점검 대행자는 성능점검 대상 설비에 대한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절차, 산업재해방지 대책, 긴급상황 매뉴얼 등 포함 ※ 점검 대상 설비 외에 점검이 필요한 설비 추가 가능
<p>4 성능점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 또는 성능점검 대행자는 구비 자료를 참고하여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성능점검 실시 -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는 관리주체에게 요청 가능
<p>5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기록 및 보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 또는 성능점검 대행자는 성능점검 완료 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와 [별표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검토사항 작성 및 보존 ※ 성능점검표 보존 기간 : 5년
<p>6 성능점검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Ⅱ.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출 안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항 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직접 인건비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고급 정보통신기술자 -중급 정보통신기술자 -초급 정보통신기술자	인 인 인 인				
2) 직접경비 -여비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등	식 식 식				
3) 제경비 (1의 110~120%)	식				
4) 기술료 ((1+3)의 20~40%)	식				
5) 부가가치세 ((1+2+3+4)의 10%)	식				
합 계					

비 고

1. 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업무범위가 변경 또는 조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대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
2. 직접 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가. 직접 인건비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의 수량과 표 1의 기준인원, 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수량에 반영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직접경비 :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다. 제경비 : 당해 업무의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으로 **직접 인건비의 110% 내지 120% 한도** 내에서 정한다.

라. 기술료 : 당해 업무를 위해 점검수행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료 및 이윤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 한도 내에서 정한다.

표 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정기준

1. 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단위	기준인원(인)	조정계수 적용 여부(연면적)
케이블설비	식	0.29	√
배관설비	식	0.58	√
국선인입설비	식	0.17	√
단자함설비	식	0.24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식	0.06	√
전화설비	식	0.10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식	0.89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식	0.52	√

2. 방송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단위	기준인원(인)	조정계수 적용 여부(연면적)
방송음향설비	식	0.50	√

표 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정기준

3. 정보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단위	기준인원(인)	조정계수 적용 여부(연면적)
네트워크설비	식	1.85	√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식	0.83	√
원격검침시스템	식	0.52	√
주차관제시스템	식	2.45	√
주차유도시스템	식	0.66	√
무인택배시스템	식	0.77	√
비상벨설비	식	0.44	√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식	0.81	√
홈네트워크 설비(전유부분)	세대	0.03	-
빌딩안내시스템(BIS)	식	1.69	√
전기시계시스템	식	0.46	√
통합 SI시스템	식	0.46	√

표 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정기준

시설관리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	식	0.54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식	0.76	√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식	0.56	√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식	0.80	-
스마트 병원 설비(의료용 너스콜)	식	2.12	√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식	0.17	√
스마트 공장 시스템	식	0.31	√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개소	0.52	-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개소	0.64	-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개소	0.13	-
디지털 사이니지	개소	0.56	-

표 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정기준

4. 기타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단위	기준인원(인)	조정계수 적용 여부(연면적)
통신용 전원설비	식	1.66	√
통신접지설비	식	0.12	√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준인원은 기술자 한 명이 유지보수·관리 또는 성능점검을 1회 실시하는데 투입되는 수량을 말한다. 2.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리·교체 등에 소요되는 기술자의 투입 수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단위의 “식” 등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4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은 울타리, 철책, 담벼락 등 경계 구간의 거리 600m를 기준으로 하며, 거리별 증감에 따라 기준인원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표 2 연면적에 따른 조정계수

연면적에 따른 조정계수	
연면적(m ²)	조정계수
5,000 이상 ~ 10,000 미만	1.15
10,000 이상 ~ 15,000 미만	1.30
15,000 이상 ~ 20,000 미만	1.45
20,000 이상 ~ 25,000 미만	1.60
25,000 이상 ~ 30,000 미만	1.75
30,000 이상 ~ 35,000 미만	1.90
35,000 이상 ~ 40,000 미만	2.05
40,000 이상 ~ 45,000 미만	2.20
45,000 이상 ~ 50,000 미만	2.35
50,000 이상 ~ 55,000 미만	2.50
55,000 이상 ~ 60,000 미만	2.65
60,000 이상	2.80

1. 영 제37조의2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른 조정 계수”를 적용한다.

별첨, 2024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70,112	451,475	450,075	452,718	451,020	555,998	433,045
특급기술자	391,791	350,252	330,713	358,273	347,410	451,676	346,423
고급기술자	327,056	300,034	301,470	300,980	311,177	377,211	297,079
중급기술자	281,925	283,992	272,298	284,046	260,926	360,023	246,345
초급기술자	247,713	238,294	234,973	223,644	234,568	284,926	219,507
고급숙련기술자	290,015	289,668	253,886	267,012	258,712	345,896	273,830
중급숙련기술자	223,521	237,151	219,833	240,710	222,595	331,533	223,447
초급숙련기술자	204,830	197,097	190,539	204,392	190,631	223,252	182,031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

○ 월평균 근무일수 : 20.5일

○ 적용일 : 2025년 1월 1일 부터

실비정액 가산방식 최소값과 최대값 비율계산식

110%, 20%적용 원가계산	115%, 30%적용 원가계산	120%, 40%적용 원가계산
직접인건비 : 100% 제경비 : 110% 기술료 : 20% 비용산출은 직접 인건비의 2.52배	직접인건비 : 100% 제경비 : 115% 기술료 : 30% 비용산출은 직접 인건비의 2.8배	직접인건비 : 100% 제경비 : 120% 기술료 : 40% 비용산출은 직접 인건비의 3.08배
$(100\% + 110\% = 210\%)$ (직접인건비+제경비) $\times 20\%(0.2) = 42\%$ (직인건비+제경비) $\times 20\%$ $210\% + 42\% = 252\% \div 100\%$ = 2.52배	$(100\% + 115\% = 215\%)$ $\times 30\%(0.3) = 64.5\%$ $215\% + 64.5\%$ $= 279.5\% \div 100\%$ = 2.795배 = 2.8배	$(100\% + 120\% = 220\%)$ $\times 40\%(0.4) = 88\%$ $220\% + 88\% = 308\% \div 100\%$ = 3.08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계산 방식 (단, 통신설비만 적용)

110%, 20%적용 원가계산	115%, 30%적용 원가계산	120%, 40%적용 원가계산
직접인건비 : 100% 제경비 : 110% 기술료 : 20% 비용산출은 직접 인건비의 2.52배	직접인건비 : 100% 제경비 : 115% 기술료 : 30% 비용산출은 직접 인건비의 2.8배	직접인건비 : 100% 제경비 : 120% 기술료 : 40% 비용산출은 직접 인건비의 3.08배
예, 적용, 30,000평방미터 고급기술자, 통신설비만 2.52(적용) * 1.9(조정계수) * 300,000원 * 2.85명 = 4,093,740원	예, 적용, 30,000평방미터 고급기술자, 통신설비만 2.8(적용) * 1.9(조정계수) * 300,000원 * 2.85명 = 4,548,600원	예, 적용, 30,000평방미터 고급기술자, 통신설비만 3.08(적용) * 1.9(조정계수) * 300,000원 * 2.85명 = 5,003,460원

先思先行, Think First, Do First!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이지만
여러 사람이 비전을 가지면 현실이 된다.